

[서식 5]

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							
신청인	사업체명			대표자			
	고용보험 관리번호			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	☐ 해당 ☐ 비해당		
	업종	(주생산품:)		중견기업 해당여부	☐ 해당 ☐ 비해당		
	소재지						
	담당자 성명			전화번호			
신청내용	유형	신규창출		시간선택제 전환		근로조건 개선	합계
		(최저임금 120%~ 130% 미만)	(최저임금130 % 이상)	장려금 등	대체인력 지원금		
	인원	명	명	명	명	명	명
	금액	원	원	원	원	원	원
	계좌번호	은행 (예금주:)					
4대 사회보험 가입		☐ 가입 ☐ 미가입		보험료 납부		☐ 납부 ☐ 미납부	
전일제(통상) 근로자와 차별 여부		불합리한 ☐ 차별 없음(☐ 임금 ☐ 상여금 ☐ 휴가) ☐ 차별 있음					
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 인원 수 (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의 경우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)						명 (명)	
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7조 및 제35조, 「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」에 따라 위와 같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.							
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		
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지청)장 귀하							
※ 구비서류 1. 공통: 가. 근로계약서 나. 지원기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각 1부 다. 실근로시간(연장근로 포함)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. 시간선택제 전환(전환장려금, 간접노무비): 가. 전환 전·후 근로계약서 나. 전환 전 3개월분 임금대장 다. 월 평균임금 등 상승액 산정 관련자료(임금대장 등) 라. 취업규칙, 단체협약,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등 전환제도 도입 증빙서류(최초 지원금 신청 시에만 제출) 3. 시간선택제 전환(대체인력):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 대체인력 입증 서류(업무분장 등) 4. 근로조건 개선: 전환 전·후 근로계약서, 월 평균임금 등 상승액 산정 관련자료(임금대장 등)							

지원금 신청대상 목록

☞ 서식에 기재된 내용들은 예시임.

○ 신규 창출

최저임금 대비 임금수준	성명 (생년월일)	고용 일자	주당 소정근로 시간	타 지원금 수령여부	신청 기간	연장근로 여부	신청기간 임금총액	신청기간 지원대상 임금액	신청 금액
☐ 120% ~ 130% 미만				☐ 수령 ☐ 미수령					
☐ 130% 이상					합계				
:									
계	명					원			

○ 시간선택제 전환(전환장려금 및 간접노무비)

성명 (생년월일)	고용일	전환 사유*	주당 소정근로시간		월평균임금		타 지원금 수령여부	신청기 간	연장근로 여부	신청 금액
	전환일		전환전	전환후	전환전	전환후				
							☐ 수령 ☐ 미수령			
							합계			
:										
계	명								원	

*전환사유: 육아, 학업, 퇴직준비, 간병, 가족돌봄, 본인질병 등

○ 시간선택제 전환(대체인력지원금)

전환근로자		대체인력			타 지원금 수령여부	신청 기간	연장근로 여부	신청기간 임금총액	신청기간 지원대상 임금액	신청 금액
성명 (생년월일)	전환 일자	성명 (생년월일)	고용 일자	주당 소정근로 시간						
					☐ 수령 ☐ 미수령					
					합계					
:										
계	명					원				

○ 근로조건 개선

성명 (생년월일)	고용 일자	개선 일자	주당 소정근로시간		월평균임금		타 지원금 수령여부	신청 기간	연장근로 여부	월평균 임금등 상승액	신청 금액
			개선전	개선후	개선전	개선후					
							☐ 수령 ☐ 미수령				
							합계				
:											
계	명								합계		

(뒤 쪽)

구 분	작 성 방 법
공 통	○ '우선지원 대상기업'란에는 해당, 비해당 여부에 따라 "√"표시를 합니다. ○ '보험료 납부'란에는 보험료 납부 여부에 따라 "√"표시를 합니다. ○ '전일제(통상) 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 여부'란에는 임금, 상여금, 휴가 등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(근로시간 비례보호 원칙 적용) 없이 차별하는 지 여부에 따라 "√"표시를 합니다. ○ '고용조정 인원수'는 지원대상 근로자 채용 전 3개월, 채용 후 12개월 내에 감원한 인원(자발적 사직은 제외)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. ○ '최저임금 대비 임금수준'에는 근로년도의 최저임금 대비 지원대상의 임금수준을 기재합니다. ○ '주당소정근로시간'은 4주 평균한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. ○ '타 지원금 수령'란에는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(인건비, 장려금 등)을 수령한 경우 "√"표시를 합니다. ○ 신청기간은 임금지급 단위기간으로 적거나, 고용일부터 1개월 단위로 적습니다. 예) '15.3.9 채용시' 15.3.9~3.31, '15.4.1~4.30 또는 '15.3.9~4.8, '15.4.9~5.8 ○ '연장근로 여부'란에는 신청기간의 각 주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2시간 초과한 주가 있으면 "√" 표시
신규창출 및 시간선택제 전환(대체인력)	○ '신청기간 임금총액'은 신청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으로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재합니다. ○ '신청기간 지원대상 임금액'은 임금총액 중 연장근로수당, 연차수당 및 실비변상적 금품(출장비, 숙직비 등)을 제외한 지원대상 임금액을 기재합니다. ○ '신청금액'은 '신청기간 지원대상 임금액'의 50%(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한도, 대규모기업 60만원 한도)를 기재합니다. * 대체인력지원금의 신청금액은 임금의 50%(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한도, 대규모기업 30만원 한도)를 기재합니다.
시간선택제 전 환 (전환장려금, 간접노무비)	○ '월 평균임금'은 임금총액을 연단위로 산정한 후 12월로 나눈 금액을 기재합니다. -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, 각종 수당(식비, 교통비 등) 등이 포함되며,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로 받는 금품(시간외근로수당, 연차수당) 및 실비변상적 금품(출장비, 일·숙직비 등)은 제외됩니다. ○ '월 평균임금 등 상승액'은 전환 후 월 평균임금^①에서 전환 전 월 평균임금^②을 전환 후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임금^③을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. 예) 주당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, 월 임금 200만원, 상여금(2월단위) 100만원인 근로자가 주당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, 월 임금 110만원, 상여금(2월단위) 50만원으로 전환 → ①에서 ③을 뺀 금액 10만원을 기재 ① $\{(110\text{만원} \times 12\text{월}) + (50\text{만원} \times 6\text{월})\} / 12\text{월} = 135\text{만원}$ ② $\{(200\text{만원} \times 12\text{월}) + (100\text{만원} \times 6\text{월})\} / 12\text{월} = 250\text{만원}$ ③ $250\text{만원} \times 20\text{시간} / 40\text{시간} = 125\text{만원}$ ○ 신청금액은 전환장려금 + 간접노무비 금액을 기재합니다. - 전환장려금: 월 평균임금 상승액(모든 기업을 지원) - 간접노무비: 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에만 월 20만원 지원
근로조건 개 선	○ '월 평균임금'은 위 시간선택제 전환의 계산 방법과 동일합니다. ○ '월 평균임금 등 상승액'은 개선 전·후 임금차액을 기재합니다. ○ 신청금액은 월 평균임금 등 상승액의 50%를 기재합니다.